

안산시 4·16 참사 피해극복 대책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

의안
번호 2571

제출년월일 : 2014.11.20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제정이유

-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로 인한 피해 극복과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그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함.

주요내용

가. 협의회 기능

- 4·16 참사 피해극복 대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- 4·16 참사 피해극복을 위한 대책활동의 연계·협력에 필요한 사항
- 그 밖에 시장이 4·16 참사 피해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나. 협의회 구성

-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
- 공동위원장 1명은 시장으로 하고 나머지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
-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
 - 종교계, 학계, 언론계, 경제계, 문화예술계 등 각 분야에서 경함이 풍부하고 공익을 대표하는 자
 -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
 - 4·16 참사 피해극복을 위한 대책활동과 관련된 기관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자

다. 실무협의회

- 협의회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음.

제정조례안 : 불임

관계법령발췌서 : 불임

- 『지방자치법』 제116조의 2
- 『지방자치법 시행령』 제80조, 제80조의2, 제80조의3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예산수반사항 : 불임(비용추계서 참조)

사전예고 결과 : 의견있음

- 입법예고 : 2014.10.21. ~ 10.31.(10일간)/11. 3. ~ 11.10.(연장 7일간)

기타 참고사항 : 불임

- 방침계획서 1부

안산시 4·16 참사 피해극복 대책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고,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그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치) 4·16 참사(이하 “참사”라 한다)와 관련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안산시 4·16 참사 피해극복 대책 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3조(기능)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·조정한다.

1. 참사 피해극복 대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2. 참사 피해극복을 위한 대책활동의 연계·협력에 필요한 사항
3. 그 밖에 위원장이 참사 피해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조(구성) ① 협의회의 위원수는 25명 이상 30명 이하로 하며, 위원의 성별 구성인원은 「여성발전기본법」 제15조제1항에 따른다.

② 위원장은 2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되, 그 1명은 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으로 하고 나머지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, 시장이 정하는 4명의 안산시 4급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

1. 종교계, 학계, 언론계, 경제계, 문화예술계 등 각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고 공익을 대표하는 자
2.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
3. 4·16 참사 피해극복을 위한 대책활동과 관련된 기관·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자

④ 협의회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.

제5조(위원의 임기) 당연직 위원 임기는 해당 직책의 재직기간으로 하며,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 위원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6조(위원의 해촉)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본인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
2.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활동이 어려운 경우
3. 위원의 품위 손상 또는 회의 참석 및 활동 실적이 저조한 경우

제7조(운영)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1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2.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
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8조(간사 및 서기) ①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서기는 업무담당계장으로 한다.

② 협의회 간사는 회의록을 기록·작성하는 등 협의회 행정사무를 처리한다.

제9조(실무협의회)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협의회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.

② 실무협의회는 각 분야별 실무책임자 중에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,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0조(의견의 수렴 등) ①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, 자료의 제출 및

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회에서 협의·건의된 사항이 시책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1조(수당 및 여비) 시장은 협의회 회의 및 공청회·토론회에 출석한 위원·전문가·관계인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2조(운영규칙)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 만 균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총괄지원계장 이 석 종
	담 당 자 성명·전화	김 혜 련 (행정 3315)

안산시 4·16 참사 피해극복 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2571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14년 12월 9일
제안자 : 문화복지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조례의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 국가 법령에 맞춰 일관성 있게 조문의 용어를 수정하고,
- 협의회의 구성 중 4·16 세월호 참사 피해가족의 참여를 명확히 하고자 위촉대상을 구체화 함.

2. 주요내용

- 조례안의 제명과 조문의 “4·16 참사”를 “4·16세월호참사”로, “4·16 참사 피해극복”을 “4·16세월호참사 피해극복”으로 수정함(조례안의 제명, 안 제2조).
- 협의회 구성에 따른 위원 위촉대상에 “참사 피해가족을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”를 신설함(안 제4조제3항제3호).
- 협의회의 존속기한을 “2019년”에서 “2018년”으로 수정함(안 제4조제4항).

안산시 4·16 참사 피해극복 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안산시 4·16 참사 피해극복 대책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조례안의 제명을 “안산시 4·16 참사 피해극복 대책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”에서 “안산시 4·16 세월호참사 피해극복 대책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”로 한다.

안 제1조 중 “발생한 세월호”를 “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는”으로 한다.

안 제2조 중 “4·16 참사”를 “4·16세월호참사”로, “4·16 참사 피해극복”을 “4·16세월호참사 피해극복”으로 한다.

안 제4조제3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, 제4호 중 “4·16 참사”를 “참사”로 하며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참사 피해가족을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

안 제4조제4항 중 “2019년”을 “2018년”으로 한다.

안산시 4·16 참사 피해극복 대책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 대비표

제정안	수정안
안산시 4·16 참사 피해극복 대책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	안산시 4·16세월호참사 피해극복 대책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고,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그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는 ----- -----.
제2조(설치) 4·16 참사(이하 “참사”라 한다)와 관련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안산시 4·16 참사 피해극복 대책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	제2조(설치) 4·16세월호참사----- ----- --- 4·16세월호참사 피해극복 ----- -----.
제4조(구성) ① 협회회의 위원수는 25명 이상 30명 이하로 하며, 위원의 성별 구성인원은 「여성발전기본법」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촉한다. ② 위원장은 2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되, 그 1명은 안산시장(이하“시장”이라 한다)으로 하고 나머지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, 시장이 정하는 4명의 안산시 4급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 1. 종교계, 학계, 언론계, 경제계, 문화예술계 등 각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고 공익을 대표하는 자 2.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. <신설> 3. 4·16 참사 피해극복을 위한 대책활동과 관련된 기관·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자 ④ 협회회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.	제4조(구성) ① ----- -----. ② ----- -----. ③ ----- -----. 1. ----- ----- 2. ----- 3. <u>참사 피해가족을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</u> 4. <u>참사</u> ----- ----- ④ ----- 2018년 ----- -----.